

초정기획

2. 국제환경규범의 현황과 전망

목 차

- I . 국제환경규범의 배경
- II . 주요 환경규제조치와 무역효과
- III . 환경과 무역 연계 및 대응방안
- IV . 맺는말

朴 鍾 植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소장

(Tel: 02-728-8857)

I . 국제환경규범의 배경

1. 지구환경문제 논의 배경

1972년 스톡홀름에서 인간 환경선언이 채택된 이래 지구 환경에 대한 논의는 동서냉전구도하에서 양진영간의 이념 대립으로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상태에 있었으나, '80년대 들어 냉전구도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 지구환경파괴의 정도가 심각해졌으며 그 파급효과가 어느 한 국가에 그치지 않고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구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환경파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환경협약을 체결하여 각국으로 하여금 환경파괴적인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몬트리얼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등 중요한 국제환경협약이 속속 체결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이미 체결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각종 환경협약은 1800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92년 6월에는 환경에 대한 전인류의 관심을 반영하여 UN환경개발회의(UNCED)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손으로"라는 기치 아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를 계기로 지구환경보존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국제적인 노력들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로서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지구환경보호 즉,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에 대한 범세계적인 공감대를 조성하였고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 "의제 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등의 채택을 통하여 향후 구체적인 후속조치협상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UNCED 이후 위와 같은 국제환경협약의 발효와 함께 UNEP UNCTAD, OECD, ISO 등 국제기구에서의 환경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GATT/WTO에서의 무역·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환경논의 및 국제협약은 각국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무역규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국제무역 및 통상문제와 직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환경논의의 이면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지구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유지와 기술패권주의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2. 환경과 무역의 연계 배경

1990년에 북유럽 자유무역협정(EFTA)은 기존의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의 연구를 위한 작업반(EMIT 그룹)'을 활성화시켜 환경정책과 무역과의 관계를 논의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이것이 환경을 빌미로 한 선진국의 무역규제의 서곡이 될 것으로 판단한 GATT 회원국에 의해서 기각되었는데, 때마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환경협정의 체결을 연계하고, 참치-돌고래 분쟁을 일으킨 당시의 미국의 행태가 이러한 염려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의 성공적 타결은 새로운 통상이슈를 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WTO 회원국들의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가 구축됨에 따라 환경·무역의 연계가 논의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 4월의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환경과 무역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함으로써 환경과 무역의 연계가 새로운 통상이슈로 떠오르면서 소위 국제환경규범이 태동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환경협상 논의의 주요 주제는 위반시의 제제수단에 관한 것으로 무역규제조치에 대한 것이다. 전지구적인 정부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반한 국가에 대해 국내에서와 같은 벌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제간에 있어서는 무역규제가 거의 유일한 제제 수단이므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무역·환경의 연계문제, 이른바 국제환경규범의 대두는 순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신무역질서를 주관하는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선진국들, 특히 미국의 경우 환경요인을 자국산업의 경쟁력회복과 비교우위 확보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분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 국제경쟁력이 강한 나라(선진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공해방지비용이 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반면에 가격경쟁력이 약한 나라(개도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공해방지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혹은 적게 부담함으로써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국이 서로 다른 환경기준하에서 환경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됨으로써 이들 제품간의 가격경쟁력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들 제품간의 수출경쟁력의 역전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현상하에서 결정되는 수출 경쟁력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엄격한 환경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세계적 차원에서 설정된 일정한 환경기준하에서 환경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이러한 정책적 조치하에서 공정한 수출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를 위하여 세계규모의 다자간 환경협상을 통해 환경과 무역의 연계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3. 국제환경규범의 실체

최근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각종 국제협약과 미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의 개별 입법이 상당한 무역조치를 포함하여 따라 기존의 GATT체제를 수정 및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GATT/WTO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환경규범이 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협정의 의미에 있어서 국제환경규범이란 환경요소를 감안하여 기존의 국제무역질서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다자간의 협상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1992년 리우선언에서 천명한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이라는 대원칙과 이의 이행강령인 '의제 21' (Agenda 21)의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 국제환경규범이란 환경을 이유로 하여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가별 환경

조치, 무역조치를 포함하는 환경협약 뿐만 아니라 다자간의 환경통상협상, 당사국간의 쌍무적 혹은 일방적인 조치 전체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환경규범에 있어서 작용하는 역학관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일부 선진국들이 냉전시대 종식 이후 지구환경보존이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국제경제·정치질서의 패권확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환경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무역제한을 가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환경대책을 강화하지 않는 국가의 수출이 선진국 시장에 접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개도국들의 자세를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GATT/WTO의 규정상 인정되고 있지 않는 '환경덤핑(Eco-dumping)'을 규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찬반이 엇갈리는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 환경문제의 사인에 따라서는 '무임승차자(free-rider)'의 문제를 방지하고 국제환경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조치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 외에도 선진 각국은 환경규제강화가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에 대비하고 있는 바, EU는 환경서도입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국경세 조정을, 미국은 환경상계관세 부과 등을 통해 지구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최근 지구환경문제에 해결을 둘러싸고 대두되고 있는 국제환경규범의 내용과 향후 전개방향을 숙지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먼저 주요 환경규제조치의 무역효과를 약술하며, 환경과 무역의 연계 논의 내용을 WTO/CTE의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무역과 환경의 향후 연계방향을 조망해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주요 환경규제조치와 무역효과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이 국제환경규범 제정을 통해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내세워 무역규제를 하려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환경규제수단은 그 기능에 따라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에 의한 규제와 직접규제(command and control)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경제적 수단은 경제주체의 환경의사결정과정에서 비용과 편익개념을 적용시켜 가격 메카니즘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규제수단으로서 오염자의 자율적이고 신속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환경세 및 부과금, 사용자 부담금, 예치금제도, 각종 등록세 및 벌과금 등이 속한다. 반면에 직접규제수단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기준을 설정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하거나, 생산기술, 오염방지기술을 규제하여 오염배출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수단이다. 여기에는 오염물질 및 환경비친화적인 제품(또는 생산)에 대한 금지 및 제한조치 등이 속한다. 이러한 환경규제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에서 간략히 고찰하기로 한다.

1. 경제적수단에 의한 환경규제조치와 무역

1) 환경세(Environmental Tax)

환경세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또는 생산행위에 부과되며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경제 행위를 환경친화적으로 변경시킬 목적으로 실시된다. 환경세는 가격과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반적으로 직접규제와 더불어 실시되기 때문에 그 경우 생산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커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됨에 따라서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규제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탄소세의 경우는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국은 환경세와 더불어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보조금 지급, 특정부문에 대한 환경세의 면제 또는 감면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세는 공해산업으로부터 청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부과되는 것인만큼 이러한 국내 산업구조 조정은 공해산업의 축소와 무역구조의 개편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2)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

이 제도는 이미 선진 각국에서 식료용기의 회수 및 재활용 제고를 위해서 많이 실시되어 왔고 상당한 환경개선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도가 무역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식료용기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포장폐기물 및 제품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예치금제도가 중점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료용기 뿐만 아니라 포장폐기물, 가전제품, 폐차 등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예치금제도가 확대 실시될 경우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3) 환경상계관세(Environmental Countervailing Duties)

환경기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기업이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준수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이는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후진국의 느슨한 환경기준은 기업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묵시적 보조금이라간주하는 것이 선진국의 입장이다. 환경기준의 차이에 따른 이러한 경쟁력의 격차를 상쇄함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일각에서는 환경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환경상계관세가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될 경우 부과세율 만큼의 가격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품질보다는 싼 가격에 의존하는 개도국의 제품은 선진국시장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환경상계관세는 환경규제 수준의 차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환경규제기준에 따른 환경상계관세체제는 매우 복잡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잦은 무역마찰이 예상된다.

4) 국경세 조정(Border Tax Adjustment)

국경세조정은 각국이 나름대로 부과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 상이함으로 인해 교역제품에 대해 이중과세(double taxation)가 부과될 수 있는 바, 이에 따른 경쟁여건의 부당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통상 이것은 국내 동종상품에 상응하여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거나 수출품에 대해 환급(rebate)될 수 있는 내국세의 종류 및 그 적용양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GATT/WTO 규범하에서 간접세로 간주되는 환경제품세(사용될 때 혹은 소비된 후 오염을 야기하는 휘발유, 자동차, 화학물질, 살충제 등의 제품에 부과)는 국경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반면 직접세로 간주되는 환경공정세(환경을 오염시키는 생산공정 및 시설에 부과)의 국경세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환경제품세는 동종 수입품에 부과될 수 있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다. 반면에 환경공정세는 동종 수입품에 부과될 수 없으며 수출환급도 불가능하다. 한편 경제적 수단의 국내적 사용과 연계된 국경세 조정은 국내 환경규제와 연계된 환경상계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행이 검토되고 있다.

2. 직접규제수단에 의한 환경규제조치와 무역

1) 제품에 대한 규제

제품의 규격 및 특성에 대한 표준, 요건 등은 제품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직접규제수단으로서 그 효과가 직접적이고 단기간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품에 대한 규제는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을 통제하기 위한 간접수단으로서 제품에 대한 규제가 이용되기도 한다.

제품에 대한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비의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 경쟁력의 변화와 시장진입장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규제요건의 강화는 생산비를 상승시켜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규제실시국가의 대상제품이 국외로 수출될 경우에는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대외경쟁력이 저하되지만 자국시장에서는 오히려 보호를 받는 대내 경쟁력 상승효과도 있다. 제품의 규격 또는 특성에 대한 규제요건 또는 표준이 규제를 실시하는 선진국의 특수한 환경적 사정을 반영할 경우에는 그 규제요건을 충족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개도국에게는 부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표 1>참조).

2) 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대한 규제

제품의 사용과 소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 유통 및 판매, 사용 및 폐기 등 전주기(life-cycle)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의 실시는 소기의 환경개선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다. 따라서 환경규제조치는 제품의 환경적 특성이나 품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도 적용되어 온다는 것이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에 대한 규제논의이다.

PPMs 규제의 방법에는 직접규제, 경제적

<표 1> 국제환경규범 관련 직접규제수단의 형태

직접규제형태	규제내용
상품과 성분의 사용규제 및 금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제품 및 물질의 생산, 사용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완전 금지시킴
공정 및 생산방식(PPMs)의 규제 및 금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생산공정에 대한 규제 및 금지조치
강제규범(기술규정, 표준 등)	제품, 공정, 배출 및 환경기준 등 광범위한 부문에 대해 규제기관이 설정하는 기술적 규정과 표준
자원사용량 할당	재생가능한 자원의 보전과 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자원사용량 쿼타를 정함
정보공개 의무	유해물질 배출자료 제출의무, 환경영향평가 시행의무, 검사 및 인증 절차 관련 자료 제출의무 등을 지칭함
사전통보 승인절차	유해상품, 폐기물, 멸종위기 동식물의 수출입 또는 사용을 통제, 금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국제적으로 사전 통보함

수단을 이용한 간접규제, 자발적 협조체제 등이 있다. 직접규제는 소수의 특정 PPMs를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특정 PPMs를 금지하고 나머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배출기준 또는 성과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면 어떠한 PPMs도 사용가능한 방법 등이 있다. 경제적 수단을 공해배출부과금, 과세, 보조금 등이 있다. 자발적 협조에 의한 방법에는 환경마크 부착 상품 및 기타 환경친화적 상품의 구매유도 등이 있다.

PPMs가 갖고 있는 무역규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TO 규정은 제품 및 유사제품에 대한 무역규정이다. 0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세와 규제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원칙"으로 이 두 조항의 의미는 수입품이 국내의 유사제품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출하는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무차별대우원칙을 의미한다.

3) 생산자 책임의 강화

제품의 포장, 재이용 및 재활용, 폐기물(포장폐기물 및 사용후 제품폐기물) 회수의무, 폐기물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제품디자인 규정 등 환경측면에서 생산자의 책임 (producer liability in environmental aspects)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제품 및 포장에 대한 생산자의 제반 책임은 선진각국에서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규제에 의한 원가 상승의 요인은 국내업자 보다는 수출업자에게 더 불리하기 때문에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 시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리적으로 특히 불리한 입장이며, 또한 우리나라 기업은 선진국의 기업에 비해서 신소재개발 및 제품디자인 기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중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3. 자발적 협조체제에 의한 환경규제조치와 무역

1) 환경마크제도

환경마크제도는 일방적 무역규제나 정부의 명령통제와는 달리 시장을 이용한 방법으로서 기업에게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하고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 또한 국제무역이 왜곡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환경마크대상제품의 선정, 환경마크 부여기준, 환경마크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운영절차상 자국의 이익과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또 환경마크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출국의 기업체에 거 더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환경마크제도는 실질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이 된다.

2) 자동차 연비등급제 및 배기가스 규제

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사용시의 각종 대기오염 규제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가스배출의 억제와 에너지절약, 폐차의 수거 및 재활용 등 다방면에서 강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 연비와 배기가스 문제는 자동차의 성능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자동차 산업의 기술력과 직결된다. 자동차에 대한 최저 연비기준, 연비등급에 따른 차등과세, 배출규제기준의 강화 및 차등과세 등이 실시되면 이 분야의 기술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술 및 부품의 국내개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선진국의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강화는 시장진입의 장벽이 될 수 있다.

3) 에너지효율등급제

에너지효율등급제는 에너지 등급을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세/에너지세,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등이 선진 각국에서 강화되면 그와 비례하여 가전제품과 기타 에너지 이용기기의 에너지 효율등급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전제품 및 에너지 이용기의 효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선진국이 에너지 등급제를 강화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비단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탄소세, 에너지세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4) 국제환경경영규격(ISO 14000 시리즈)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14000 시리즈 인증의 경우는 수입국에서 수출기업에 규격인증의 획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 대상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건설, 유통, 해운, 서비스업 등 전 산업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SO 14000 시리즈의 인증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원가상승에 의한 가격경쟁력의 변화와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의 작용 두가지 측면이다. 특히, ISO 14000 시리즈는 개도국 기업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 기업의 경우는 국내시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생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증획득에 드는 추가비용이 제품의 생산원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환경과 무역 연계 논의 및 대응방안

1. WTO/CTE의 논의 방향

1) 논의 의제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들이 국제환경협약이나 개별국가의 일방적인 무역장벽에 다양하게 포함되어 감에 따라 WTO/GATT의 기본이념인 자유무역과 상충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되었으며 또한 조치들간 무역규제내용도 크게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무역규범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의주제는 1990년이래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UNEP이나 UNCTAD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역시 가장 활발한 논의의 장은 OECD와 WTO/GATT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세계무역을 주관하고 있는 GATT는 1991년부터 무역환경 작업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바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조인을 위해 1994년 4월에 열린 마라케시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전부터 WTO 내에 무역과 환경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2년간의 검토 결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수 많은 논쟁을 통하여 1996년 12월 9~13일간 벌어진 WTO 싱가포르 총회의에서 그간의 논의 내용이 10가지 주요 의제로 정리 되었다.

-의제 1: 국제환경협약(MEA)상의 무역규제 조항과 다자간무역체계(MTS)와의 관계

-의제 2: 무역관련 국내환경조치와 다자간 무역체계(MTS)와의 관계

-의제 3: MTS와 아래의 환경책수단과의 관계

a) 환경목적의 부과금·세금

b) 기준 및 기술규정, 포장, 환경라벨링, 재활용 등 제품관련 환경요건과의 관계

-의제 4: 환경 관련 무역조치의 투명성과 MTS

-의제 5: NTS와 MEA의 분쟁해결절차

-의제 6: 개도국의 시장접근 문제

-의제 7: 국내판금품 수출문제

-의제 8: 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환경

-의제 9: 서비스의 교역과 환경

-의제 10: NGO와의 관계 등 10개의 의제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10 개의 의제 중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PPMs)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의제 1>과 환경마크제도를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다루는 <의제 3>이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의제 4>와 <의제 5>는 2단계 논의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의제별 논의 쟁점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 세계무역기구 무역환경위 논의 의제

의제 (ITEMS)	논의쟁점 (ISSUES)	비 고
<p>〈의제1〉 국제환경협약을 포함한 환경 목적의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체계 규정과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As와 WTO규정에 따라 취해진 무역조치의 합치성 보장문제 - 관련 MEA에 포함된 무역조치에 대한 WTO의 투명성 체계의 적절성 - 의제5와 연계 	
<p>〈의제2〉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정책과 다자간 무역체계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의제들이 의제1, 의제3에서 다루어져 추가 논의가 불필요 	
<p>〈의제3〉 다자간 무역체계의 규정과 다음사항과의 관계 (a) 환경목적의 부과금·세금 (b) 기준 및 기술규정, 포장, 환경마크, 재활용 등 환경 관련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세 조정이 가능한 환경세와 WTO규정의 양립 - 환경마크에 대한 TBT협정의 적용가능성 - 환경과 무역측면에서 환경마크에 관한 WTO규정의 적절성 여부 제정의 보완 및 투명성 확보필요성 - 무역과 환경측면에서 규정의 보완과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포함한 포장, 다른 환경규정, 제품요건과 기준에 관한 WTO규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환경세에 관한 정보수집 - 무역과 환경측면에서 포장 포장폐기물 처리, 다른 환경규정, 제품요건 표준에 관한 WTO규정의 적절성 여부, 규정의 보완 및 투명성 확보 필요성

의제 (ITEMS)	논의쟁점 (ISSUES)	비 고
<p>〈의제4〉 환경 관련 무역조치의 투명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들이 환경조치처를 설치 하여야 한다는 제안의 심사 - 의제1, 3과 연계 	
<p>〈의제5〉 다자간 무역체제와 국제 환경협약상의 분쟁해결 체계간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1과 연계 - 무역분쟁 해결에 있어 환경전문가 의 참여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조치의 해결이 WTO에 상정되는 경우 MEAs의 해결절차를 따를지 WTO의 해결 절차를 따를지의 문제
<p>〈의제6〉 개도국에 있어서의 시장 접근에 관한 환경조치의 효과와 무역제한, 왜곡 제거의 환경적 이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접근에 있어 환경조치의 효과 - 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 보조금, 과도한 과세를 포함한 무역 제한이나 왜곡제거로 인한 환경적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접근에 있어서의 환경조치와 환경조치의 조사를 위한 메카니즘의 구축
<p>〈의제7〉 국내관금품 수출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PG 협정의 필요성 여부 	
<p>〈의제8〉 지적재산권협저오가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이전 접근을 위한 TRIPs 협정과 환경청정기술 개발과의 관계 -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의무를 포함한 MEAs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청정기술이전의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
<p>〈의제9〉 서비스와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14조의 충분성 - 관련 MEAs와 GATS와의 연계 가능성 	
<p>〈의제10〉 민간단체와의 관계 및 투명성과 개방성 증진방안</p>		

자료: 김준한, WTO 출범 이후 무역-환경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1996. 6

2)의제별 검토

<의제 1>은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규제조치와 WTO 규정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 모든 회원국의 관심사 1위에 해당되는 주제로 현재 NEAs에 들어있는 무역규제조항과 향후 계속 대두될 MEAs에서의 무역규제조항을 과연 WTO에서 열다나 국제규범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만약 국제협약상의 무역규제 조치가 활발히 이용되도록 WTO 규범에 허용된다면 그야말로 세계는 '환경'이란 용어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크게 4가지의 해결 방식으로 의견이 나누어 있다.

첫째, 사전적 접근방식으로 GATT20조의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수용할 수 있는 무역조치를 명문화하자는 것으로 주로 유럽과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 사후적 접근방식으로 사안별로 WTO협정 9조에 의거 회원국의 의무를 면제받은 후에 무역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주로 ASEAN 국가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셋째, 현상유지론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분쟁 사례가 없으니 두고 보자는 주의다.

넷째는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방식을 채택하자는 것으로 MEAs의 협약당사자와 WTO 분쟁해결채널이 참고할 만한 다목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의제 2>는 실제 자주 논의되는 주제는 아니다. 환경 관련 무역조치의 무역효과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이 요구된다.

<의제 3>은 상당히 활발한 논쟁이 붙어있는 분야다. 3(a)의 부과금이나 조세 등의 문제보다 3(b)의 기준, 기술규제, 환경라벨링, 포장, 리사이클링 등이 훨씬 논의가 활발하다. 그 중에서도 제품의 물리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PPMs에 근거한 자발적 환경라벨링을 기술무역장벽협정(TBT)의 테두리에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까지의 주요 쟁점이다.

자발적 환경라벨링은 국제무역규범에 통제를 받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통한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무역장벽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개도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의제 5>는 <의제 1>과 완전히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의제 4>도 <의제 2>나 <의제 1>과 연계 논의 되고 있어 결국 <의제 1>에서 <의제 5>까지가 환경 및 무역 조치를 다루는 핵심의제라 할 수 있다.

<의제 6>은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를 다루고 있다. 교통, 에너지, 농업 등의 보조금 그리고 경사관세 등이 환경보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국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조만간 자유무역촉진차원에서 유사한 무역장벽에 대한 빠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제 8>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환경친화적 기술의 이전 및 접근문제해결의 키가 되고 있다.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환경기술시장의 지배욕구가 개도국과 마찰의 근본이 되고 있다.

<의제 9>는 서비스의 교역을 다루고 있어 현재까지 깊숙한 논의는 없었지만 수송문제와 연관되어 향후 활발한 논의가 예상되는 주제이다.

2. 양 체제간의 조화

향후 무역과 환경관련 논의의 핵심은 WTO/CTE의 의제 1에서 시작과 끝이 이루어 질 것이다. 기타의 주제는 어찌보던 이곳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소주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 핵심 이슈인 국제환경협약에서의 무역조치와 자유무역체제와의 조화문제 그리고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의 논의 전개 방향에 대하여 좀 더 신도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1) 환경협약과 자유무역규범

무역 조치가 갖는 중요성은 무엇보다 항상 국가간 또는 산업간의 형평성과 경쟁력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싸움도 결국 이 두 주제의 반복에 다름 아니다.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자유무역시스템이 얼마나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지 또는 환경 관련 무역조치가 과연 얼마만큼의 무역효과를 갖는 것인지 아직 아무 것도 분명한 것은 없다. 협약의 도입과 집행에 대한 무역 조치들의 영향은 사례별로 상이하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양 체제의 연계 필요성

무역과 환경 두 체계간의 연계(bridge)가 필요하다면 그 연계의 역할을 무엇이 될까? 우선 두 체계의 연계에는 두 제도간 상호보완관계를 확실히 한다는 기본 목적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한편으로는 환경보호가 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역체제 또한 보호론자나 분파론자의 무역 장벽으로부터 최대로 자유로와야 한다.

무역 조치의 본질은 앞에서 설명한 '연계'를 통해 더욱 명료해져야 한다. 무역조치의 명료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래의 기준들은 근본적인 판단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온 단계적 기준들이다.

- MEA 협의와 도입에 대한 참여
- 무역 조치에 대한 필요성 검토
- 환경적인 이득과 손실, 무역의 이득과 손실을 평가하고 균형을 맞추는 일
- 실행 가능한 최소한의 무역조치 도출
- 동일한 환경보전조치를 적용하여 이행국과 비이행국의 차별을 없애는 일
- 협약 내 무역조치의 일방적 적용과 국제적 적용에 대한 검토
- 무역조치의 적용에 대한 시기 및 제한사항

절차의 명료성이 하나의 변수가 된다.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통하여 기준들의 적용방법을 확실히 하고 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무역조항의 시행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유사한 연계메커니즘(Bridging mechanism)이 없었으므로 두 제도의 전통과 역할에 균형을 잡아 줄 정책이 필요하다.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보았을 때 WTO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WTO의 현재 절차나 운용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투명하게 전개시키는데 필요한 이해와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연계 메커니즘의 폭넓은 수용을 위해 현재 절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적용은 새로운 기구의 설립과는 다른 문제이다. 일단 제정이 되면 그 적용의 유효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세가지 방안이 있다. WTO, 일종의 독립적인 재판소, 아니면 MEA의 협의 단체이다. 무역법과 정책 전문가들은 자연히 WTO로 결심을 굳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MEA에 대해 WTO의 비토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비토권은 MEA에 의해 제기된 무역문제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것이며 따라서 환경 협약의 모든 조항들간의 어렵게 만든 균형에서 한가지 요소만을 따로 떼어놓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협약 전체의 공정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이 되는 원칙은 MEA의 협의 단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3. 공정 및 생산방법(PPMs)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이란 제품의 제조와 공정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리고 천연자원의 획득방법이다. 이를 행하는 산업활동환경에 영향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은 세계 각국에서 환경법의 주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GATT가 지금까지 허락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PPMs규정을 규제되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수입국의 PPMs규정을 적용하는 일이다. 이 적용은 수입품에의 적용금지외에 제품 특성, 사용내용, 사후처리에만 연관되는 기준적용이라는 GATT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제한은 참치-돌고래 소송의 핵심이었으며 PPMs 논쟁의 주요 쟁점으로서 폭넓은 무역 및 환경논쟁의 분쟁의 씨로 남아있다.

그러나 환경규제에 있어서의 최근의 발전 상황은 공정과 제품의 경계를 흐려놓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 제품, 특히 제지제품의 재활용 내용물에 대한 조건이다. 이것이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과 연관된 제품 기준이나, 완성제품의 특성이 아니라 종이로 만들어지는 방법에 연관된 공정 기준이나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제품에 대한 시장의 요구로 인해 상업성 일용품으로서의 "재활용 제지"라는 개념이 이러한 구별의 모호함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듯 환경규제에 대한 무역법의 적용은 또다른 문제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1) PPMs와 경쟁력

PPMs를 국내 범주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세계 공통의 환경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경우, 혹은 환경기준의 시행이 엄격하지 않거나 환경기준이 낮은 국가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 두가지 목표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한 국가에 대한 환경영향이 국가간의 혹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좀더 현실적으로 볼 때 PPMs 활용에 대한 압력이 두가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어 있다. 하나는 경쟁력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가장 효력을 크게 발휘하는 기준이 더 강력한 PPMs 기준을 따라야 하는 국내 제품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려는 바람이다.

PPMs의 일방적인 확대는 이런 모든 변수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것은 다른 국가와 별 상관이 없는 기준의 적용을 강요하는 위험을 저지르는 것이며 결국 외국의 보다 강력한 환경이슈로 인해 자원을 유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환경분야에서 일방적 PPMs를 확대시키는 것이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국가들만이 일방적 PPMs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국제무역체계에서 심한 비형평성을 낳을 것이며 중소국가들, 그리고 모든 개발도상국들은 보복을 할 수 있는 실재적인 기회는 전혀 없고 다만 예측이 불가능한 무역장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 PPMs에 대한 법적 대응

PPMs논쟁은 두가지 형태의 외부 환경 손상과 연관이 있다. 하나는 외국내에서만 존재하는 손상이다. 다른 하나는 국경을 넘어서거나 세계 공통의 손상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구별하는 일은 한 국가를 넘어 쉽게 전파되는 생태계적 피해로 인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 한 예로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기성 오염원, 특히 환경의 악화를 가져 오지 않고 동물과 식물, 인간의 몸속에 축적되는 중독성 오염원의 생성과 이용이 현재 국제적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의 제조 현장이나 화학 및 농업용 살충제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물질들은 이 현장과 수 백, 수 천 킬로 떨어진 지역까지 그 축적된 영향을 끼치고 있다. PPMs는 제조 공정동안 방출되는 이러한 오염원을 취급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제품 기준들은 제품 사용시나 사용 후에 그 오염원을 다루게 될 것이다.

PPMs의 다양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제협력을 통한 방법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명료성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목적의 명료성은 환경주의의 형식을 띤 보호주의와 환경기준의 차이로 제기된 진정한 환경문제를 분명히 구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별을 해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서로 다른 환경기준이 국내 환경에 가져올 영향과 지구 환경에 가져올 영향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국가간, 지역적, 혹은 지구적 영향이 발견되는 경우 적절한 수준의, 그리고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국내에만 그 영향이 미친다면 더 이상의 조치는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3) 최근의 사례

국제협력에 덧붙여 최근에 나타난 일부의 일방적 조치는 GATT 규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지는 않으나 심각한 무역 외국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두 개의 주요 수단, 즉 정부 프로그램으로서의 환경라벨링과 재활용 비율규정이 이용되고 있다. 그 형태가 다양하고 국내 사정을 반영한 환경기준에 지나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무역장벽으로서 무역을 제한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재활용 비율에 관한 법과 유사하게 환경라벨링도 비슷한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재활용 비율에 관한 법은 이들이 사실상 환경적으로 비재활용 제품보다 더 나은 것인가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제지분야에서 재활용 원자재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부가적인 운송조건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운송된 재활용 가능 재고 중 25%가 수입국에서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도국들은 특히 선진국들로 부터의 이러한 환경적 요구에 대응할 처지가 못된다. 개도국들이 종종 귀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재활용 원자재를 수집하거나 변형시킬 능력은 아직은 거의 없다.

4) 민간부문의 대응들

PPMs 이슈에 대한 규범 외적인 대응들은 두가지 범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환경론자들과 소비자를 통한 운동이고 하나는 산업계의 대응이다.

① 소비자의 대응

규범 외적인 영역에서 환경론자들의 대응은 교육을 통해 소비자 환경 운동을 촉진, 환경라벨링 프로그램의 장려, 대규모 기업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활동은 시장의 수요를 줄임으로써, 거래되는 제품에 대해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법 외적인 분야에서 GATT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가진 상이한 목적과 방향의 개발은 산업계로 하여금 적응과 대처가 어려운 움직이는 데 것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이 가진 법 외적인 특성으로 인해 그 영향이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GATT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대응은 무역법과의 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정부의 구매정책(procurement policies)이다. 즉 소비자로서의 정부의 대응이다. 정책적 조치는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으로서 GATT규정의 영역에 속해 있다. 만일 정부가 구입한 제품이 국내 제품에 대한 정책에 의해 제한되거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생겼다면 GATT의 제조사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표준화된 녹색정책에 의한 것이라면 거의 항소는 불가능할 것이다.

② 산업계의 대응

앞에서 살펴본 법외적인 대응들은 PPMs의 다양성에 대한 무역계의 대응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압력과 마찬가지로 산업계에 상당한 압력을 넣고 있다. 앞장에서 이미 자발적인 원칙과 행동규범, 공해방지 원칙의 적용, ISO 14000과 같은 환경경영기준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안들을 열거한 바 있다.

PPMs 이슈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개발되고 성숙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산업계는 적절한 우선 분야를 제시하여 국제적 대응에 대한 보다 신속한 협의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난분해성 유기 오염원이 포함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들 오염원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공정 및 생산 방법의 부산물로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4. 대응논리

무역과 환경은 서로 배타적인 분야가 아니며 서로 반목관계에 있어야 할 관계는 더욱 아니다. 무역은 이용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최대화시켜주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무역은 환경 활동에 상당한 재정적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다. 또한 기술을 이전하고 환경적으로 유익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역제도의 발전이 환경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지 않을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산업계 차원에서 환경경영의 패러다임은 효과적이고 무역 자유화와 맥을 같이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존 환경법의 상당수는 무역에 영향을 받는 환경사례도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무역이 증가하고 환경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역 및 환경 양자간의 상호 보완이 상당히 필요하다. 두 분야간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연계를 모색하는 긍정적인 활동과 무역, 투자 결정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환경경영 만이 이를 가능케 할 것이다.

IV. 맺는말

산업계는 강제적인 규범에 의하지 않고서도 무역,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두가 지역 사회와 산업계에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분석의 결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무역조치를 통한 환경개선 노력이 불가피한 경우, 산업계는 이러한 규제조치들이 실제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무역장벽을 초래할 위험을 부르게 되기 때문이다.

OECD가입을 확정지은 지금 우리의 산업계가 개방화, 선진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길은 이러한 무역/환경에 관한 국제적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세계 산업계의 변화 노력에 뒤지지 않는 것도 그 중의 하나다. 이런 공동규범을 요약해 보자.

첫째, 환경경영은 최고경영층까지 책임을 뚜렷이 하는 기업경영의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자율적 규범의 시행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영의 필수요소이다. 산업계와 규제자 양자 모두 자율적 규범의 효율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개선 노력, 효과적인 오염 측정시스템, 환경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을 요소로 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무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 규범을 통한 통제방식은 산업계 주도의 자발적인 체계가 채택될 때까지 무역조치 등 구체적인 규제수단이 더 이상 개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산업계가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산업계는 규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뿐만 아니라 비용효율적이고 환경효율적인 환경관리정책을 자체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이러한 자발적 조치가 세계 경제나 환경에 갖는 효율성을 보여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라벨링과 재활용 비율 규제와 같은 환경관리수단의 개발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제도들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우리 정부나 산업계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이 지나치게 보호무역적이고 국수적인 방식으로 개발될 경우, 원치 않는 무역 왜곡현상을 낳을 수 있음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이러한 간섭조치를 막기 위해서는 조심스러운 조정 과정을 거쳐 개발해야 할 것이다. 산업계의 자체 논리개발과 논의 전개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는 무엇보다 비용효율적이고 환경효율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만옥, 환경라벨링의 국제동향과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삼성지구환경연구소, 1995. 4
- 2) 강만옥, 환경세의 국제동향과 국내 도입방안 -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삼성지구환경연구소, 1996. 8
- 3) 각일천,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의 대응방안 - PPMs 규제내용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12
- 4) 김준한 외,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1993
- 5) 김준한, WTO 출범이후 무역-환경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1996. 6
- 6) 대한무역진흥공사, 국제환경협약과 우리의 무역환경, 1992
- 7) 박종식, GR체제하에서 우리산업의 대응방안, 삼성지구환경연구소, 1995. 9

- 8) 삼성지구환경연구소, 그린라운드와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1995.6
- 9) 삼성지구환경연구소, OECD 가입에 따른 산업계의 환경 대응 전략, 1996. 11
- 10) 삼성지구환경연구소, 환경보전과 우리기업, 1994. 12
- 11) 신현중, 세계환경·무역전쟁, 박영사, 1995
- 12) 외무부 국제경제국, 지구환경정보, 1996. 5., 제7호
- 13) 이동걸, 무역과 환경 - 조화와 충돌의 선택, 산업연구원, 1993
- 14) 이호생, UN 지속개발위원회의 논의현황 및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15) 임종수, 환경·무역연계에 대한 국제기구의 견해와 시사점, 환경포럼 제3권 제19호,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10
- 16) 임종수, WTO의 환경·무역연계 논의 동향, 환경포럼, 제3권 제20호,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10
- 17) 주프랑스대사관 OECD 사무소, OECD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1996. 11
- 18) 진 용, 최근의 ISO 14000 시리즈 제정 동향과 그 향후과제, 그린삼성, 삼성지구환경연구소, 1996. 8
- 19) 한국무역협회, GATT 보고서 -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992. 4
- 20) 한택환, 의제 21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2
- 21) 환경부 국제협력관, 환경·무역연계논의 분석자료집, 1995
- 22) 환경부 지구환경과, 국제환경동향 및 대응방안 - 환경·무역연계 논의를 중심으로, 1996. 11
- 23) 황진택, 산업계에서 바라본 무역과 환경문제, 삼성지구환경연구소, 1997. 1(forthcoming)
- 24) 황진택, 최근의 무역-환경 논의동향 I & II, 그린삼성 '95년 9&10월호, 삼성지구환경연구소
- 25) Esty, Daniel, Greening the GATT: Trade, Environment and the Future, 1994
- 26) The Korea Environment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Trade and Environment - International Issues and Policy Options, October 1996
- 27) WTO/CTE, Revised Draft of Sections I and II of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October 1996